

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1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헌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“국장”을 “실장”으로 정비(안 제5조제2항)
- 기타 조문 정비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1조에 따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시 설물”을 “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 설물”을 “시설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국장”을 “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증 원할”을 “증 원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평가 실시 요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시·군 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<u>시설물</u>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·군 지역본부장과 <u>시설물</u>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4조(평가 실시 요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시설물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시설물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평가지원반의 구성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<u>국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은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·도 평가단,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, 건축·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필요에 따라 <u>증원</u>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평가지원반의 구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실장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증원</u>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